

2.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 제577호)

제정	: 1969. 1. 16.	예규 제 21호
전문개정	: 1998. 7. 22.	예규 제477호
개정	: 1999. 12. 30.	예규 제491호
전문개정	: 2004. 8. 12.	예규 제509호
개정	: 2006. 8. 21.	예규 제529호
개정	: 2008. 9. 24.	예규 제554호
개정	: 2009. 10. 15.	예규 제576호
개정	: 2009. 12. 1.	예규 제57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용 종묘사업(산림용 종자와 묘목, 접·삽수, 배양묘 등 무성증식 개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제67조 내지 70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종임분”이라 함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한다.
2. “채종림”이라 함은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족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을 말한다.
3. “채종원”이라 함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형목의 종자 또는 클론(clone)에 의해 조성된 1세대 채종원을 말한다.
4. “수형목”이라 함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삽수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수형과 표현적 형질이 우량하여 지정한 수목을 말한다.
5. “채수포”라 함은 우량한 접·삽수를 채취할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일명 클론보존원)을 말한다.

6. “클론”(clone)이라 함은 접·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으로 무성번식된 단일 개체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7. “종자산지구역”이라 함은 산림용 종자가 생산된 지역으로 유전적 특성이나 생태적 조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

제 2 장 채종림 등 조성관리

제4조(채종림 등의 지정·해제)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채종림·수형목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부족하거나 채종림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는 채종임분을 선정하여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채종임분 선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채종임분의 선정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06.8.21>

제6조(채종원·채수포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산림시책상 필요할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산림용 종자관리

제7조(종자결실 예찰조사) ①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과 채종임분에 대하여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7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에 대한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7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자채취) ①채종림·채종임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채취하고, 채종원산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직접 채취한다. 종자채취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종·묘생산에 필요한 접순·귀꽃이순은 채수포에서 채취·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수포가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량 모수를 선정·채취 사용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종자산지구역목록과 별표 3의 종자산지구역도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자산지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종원산 종자의 산지번호는 수종·조성지역·조성년도에 따라 구분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종자의 검사 및 품질표시)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종자의 검사기관과 검사대상 종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지방산림청장이 채취한 종자
2. 산림환경연구소·산림개발연구원·산림자원연구소·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 : 시·도지사가 채취한 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종자산지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정하는 임업용종자감정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2)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합격종자에 대하여서는 당해 검사기관에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를 그 종자의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품질표시의 색깔은 채종원 종자는 분홍색, 채종림 종자는 녹색, 채종임분 종자는 황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도입산 및 채종원·채종림·채종임분 이외에서 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불합격 종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보유한 산림용 종자를 공급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묘목의 대행생산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학술목적·국제교류상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제 4 장 산림용 양묘사업·묘목검사 등

제10조(양묘사업과 묘목생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생산을 지정하여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채종원·채종림·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도입종자 중에서 품질검사 결과 합격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1)(2)에 의한 양묘사업 상황보고는 5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1)(2)에 의한 양묘실태조사보고는 10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양묘사업기준일람표 및 양묘사업공정일람표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④묘목생산자는 양묘사업 시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업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묘목검사) ①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묘목검사를 할 때에는 묘목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묘목검사원이 묘목을 검사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산림용묘목검사통보서를 묘목검사 7일전에 보내야 한다.

③묘목생산자가 묘목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산된 묘목을 선별하여 산지별·수종별·묘령별로 50,000본 단위로 모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④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묘목규격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에 없는 묘목의 규격은 식물분류체계상 유사한 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⑤산림용 묘목규격의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간장 : 근원경에서 정아까지의 길이

2. 근원경 : 포지에서 묘목줄기가 지표면에 닿았던 부분의 최소 직경
3. 근장 : 근원부에서 주근·측근 중 주된 뿌리부분의 말단까지의 길이

- 제12조(묘목검사 방법)** ①묘목검사원은 묘목이 가식 또는 선묘된 상태에서 검사 모집단의 묘목 품질을 우선 달관적으로 조사하여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산림용묘목검사야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묘목검사원은 모집단의 총 속수검사를 실시한 후 모집단별로 500본에 해당하는 속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모집단이 50,000본 이하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묘목을 추출하여 수량검사 및 품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확인이 안된 묘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량검사는 추출한 묘목의 실제 본수를 검사하여 시료 기준본수로 나누어 실제비율로 산출한다.
 2. 품질검사는 추출된 묘목의 간장·근원경·근장을 계측하고 규격 미달묘, 병충해묘, 연약한묘, 굴곡묘, 동·상해묘 및 형질불량묘의 불합격묘목을 가려낸 후 합격묘 본수와 시료 실제본수와의 비율을 실측하여 합격묘 비율이 95%이상 되어야 한다. 이때 병해묘 여부는 조직검사에 의해 판정토록 할 수 있다.
 - 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달관조사 결과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한 때에는 그 모집단을 불합격 묘목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즉시 재선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별 통지를 받은 자가 재검사 요청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으면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묘목검사원은 묘목 생산자의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묘목포장 등)** ①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큰묘와 작은묘로 구분하고 묘목의 건조방지재료(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및 이끼류를 말한다)를 넣고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묘목의 건조방지제로서 물수세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곤포당 4kg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묘목검사원은 검사결과 합격한 묘목을 완전히 포장하게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장시에 입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 곤포수의 5%를 풀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품질표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묘목의 수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묘목은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된 묘목 중에서 묘목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선별 지시 등) <삭제>

제 5 장 삭 제 <2008. 9. 24>

제16조 삭제 <2008. 9. 24>

제17조 삭제 <2008. 9. 24>

제18조 삭제 <2008. 9. 24>

제19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69. 1. 16.)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2.)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 30.)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버섯종균의품종등록요령(산림청예규 제33호, 1990.7.14.) 은 이를 폐지한다.

③(버섯종균의 품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버섯종균의품종 등록요령에 의하여 등록된 버섯종균품종은 부칙 제2항의 폐지예규에 불구하고 품종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 9. 2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5)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7] 산림용묘목규격표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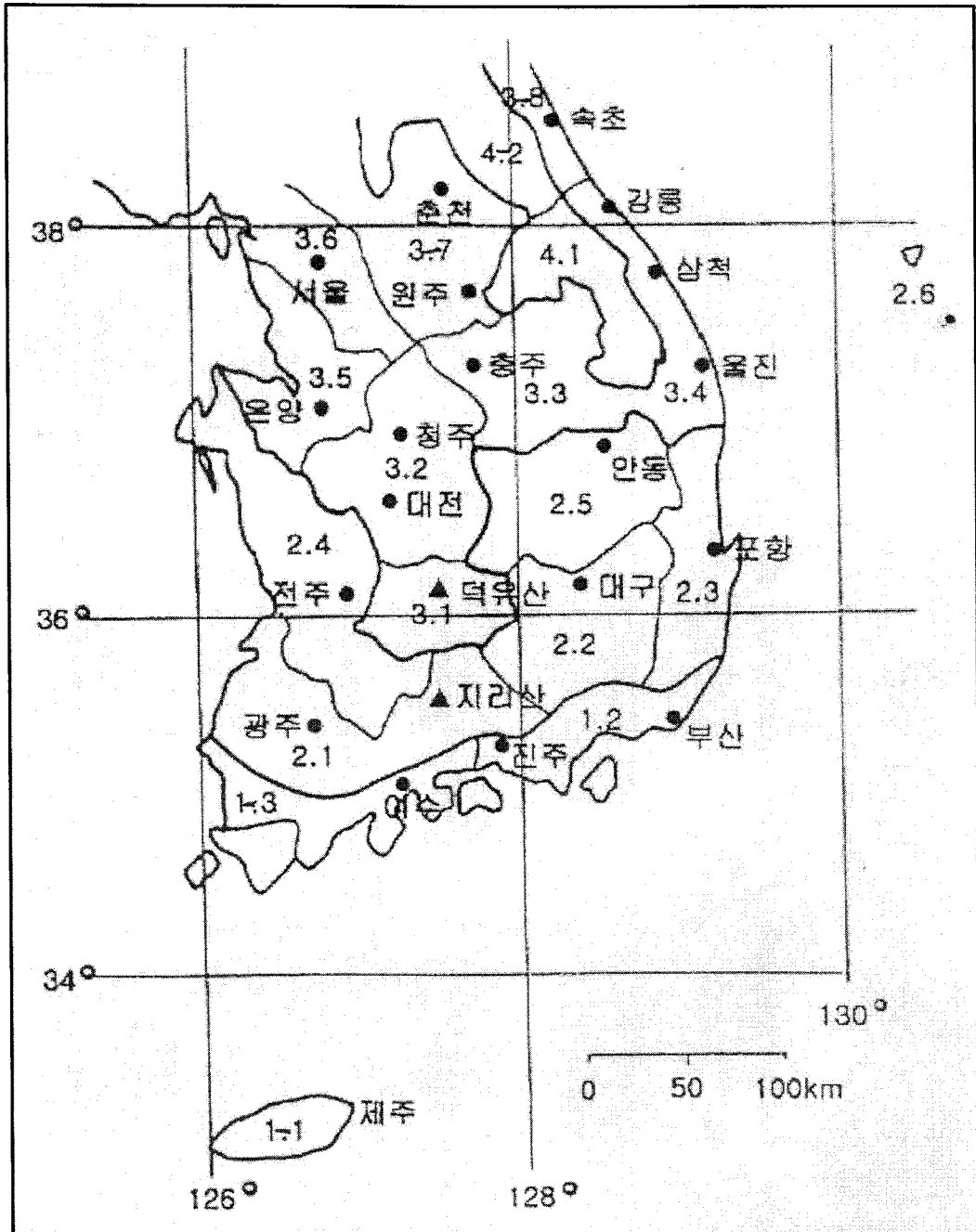
[별표 1] 삭제 <2006. 8. 21>

[별표 2] **종자산지구역 목록**

산지 번호	산지구역	산지구역 위치
1-1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제주시, 서귀포시로 형성
1-2	남부 해안	진도, 해남, 강진, 완도, 장흥(장흥, 안량, 부산면), 고흥, 여수, 남해, 사천(사천, 곤양, 용현, 정동, 축동면 제외), 통영, 고성, 거제,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부산, 울산(온산, 서생면)
1-3	서부 해안 및 내륙	신안, 목포, 무안, 나주(공산, 왕곡, 세지, 다도, 반남면), 영암, 장흥(안량, 장흥, 부산면 제외), 보성(북내, 문덕면 제외), 순천(승주, 주안, 서, 의서, 송광, 황전, 월등면 제외), 광양(다압면 제외), 하동(하동, 적량, 황천, 악양, 청암면 제외), 사천(곤양, 용현, 정동, 축동면), 진주(이반성, 일반성면), 함안(여항, 칠원면)
2-1	서남부 해안	영광, 함평, 나주(공산, 왕곡, 세지, 다도, 반남면 제외), 화순, 광주, 장성, 담양, 곡성, 남원, 순창, 고창, 정읍, 부안, 김제, 보성(북내, 문덕면), 순천(서, 의서, 송광, 황전, 월등, 주암면), 광양(다압면), 구례, 하동(하동, 적량, 황천, 악양, 청암면), 산청, 진주(일반성, 이반성면 제외), 함양(백전, 안의, 서산, 서하면 제외)
2-2	동남부 내륙	함안(여항, 일월면 제외), 창녕, 밀양, 의령, 합천(가야, 묘산, 야로면 제외), 고령, 청도, 경산, 대구, 영천, 성주(가천, 금수면 제외)
2-3	동부 해안	양산, 울산(온산, 서생면 제외), 경주, 포항, 영덕, 영양(입암, 석보면)
2-4	서북부 해안	임실(관촌, 성수, 신평, 신덕면 제외),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논산, 서천, 부여, 보령, 청양(정산, 목면 제외), 홍성, 태안, 서산
2-5	동북부 내륙	김천(증산, 지례, 대덕, 부항면 제외), 구미, 칠곡, 군위, 의성, 청송, 안동(도산, 북후, 녹천면 제외), 예천(호명, 풍양, 지보면), 상주(화남, 화서, 화북, 모서, 모동면 제외), 문경(점촌, 산양, 호계면)
2-6	울릉도	경상북도 울릉군
3-1	서남부 내륙	임실(신평, 신덕, 관촌, 성수면), 장수, 함양(백전, 안의, 서산, 서하면), 거창, 합천(가야, 묘산, 야로면), 성주(가천, 금수면), 진안, 무주, 김천(증산, 지례, 대덕, 부항면)
3-2	중서부 내륙	금산, 영동, 옥천, 상주(화남, 화서, 화북, 모서, 모동면), 대전, 청양(정산, 목면), 공주, 연기, 청주, 보은, 괴산, 진천, 음성
3-3	중북부 내륙	문경(점촌, 산양, 호계면 제외), 예천(호명, 풍양, 지보면 제외), 안동(도산, 북후, 녹천면), 영주, 봉화(법전, 소천, 춘양, 석포면 제외), 충주, 제천, 단양, 영월(상동, 수주, 북면 제외), 정선(남, 신동, 정선읍)
3-4	동남부 해안	영양(입암, 석보면 제외), 울진, 삼척(하장, 신기, 도계읍 제외), 동해, 강릉(왕산면 중 송현, 대기, 고단리 제외)
3-5	서남부 해안	예산, 아산, 천안, 당진, 평택, 안성
3-6	서북부 해안	오산, 용인, 이천, 화성, 수원, 광주, 안산, 시흥,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성남, 하남, 부천, 광명, 인천, 서울, 남양주, 구리, 의정부, 김포, 고양, 파주, 양주
3-7	서북부 내륙	원주, 여주, 양평, 횡성(둔내, 안흥, 강림면 제외), 홍천(내면 제외), 춘천, 가평(북면 제외), 동두천, 포천(일동, 이동면 제외), 화천(사내, 상서면 제외), 연천, 철원(갈말, 서, 근남면 제외)
3-8	동북부 해안	양양, 속초, 고성
4-1	태백산 지역	봉화(법전, 소천, 춘양, 석포면), 태백, 영월(상동, 수주, 북면), 정선(남, 신동, 정선읍 제외), 삼척(하장, 신기, 도계읍), 강릉(왕산면 중 송현, 대기, 고단리), 평창, 횡성(둔내, 안흥, 강림면)
4-2	북부산악 지역	홍천(내면), 인제, 화천(사내, 상서면), 양구, 가평(북면), 포천(일동, 이동면), 철원(갈말, 서, 근남면)

[별표 3]

종자산지구역도



[별표 4]

종 자 품 질 기 준

수 종	순량율 %이상	발아율 %이상	수 종	순량율 %이상	발아율 %이상
가래나무	98	62	동백나무	96	63
가문비나무	78	57	두충나무	98	68
가중나무	89	63	들메나무	94	44
갈매나무	89	56	때죽나무	82	68
갈참나무	76	72	떡갈나무	74	87
개나리	85	20	리기다소나무	91	85
개물푸레나무	92	52	리기태다소나무	94	85
개박달나무	51	12	말채나무	96	42
광나무	97	66	모감주나무	98	72
개벚나무	98	62	무궁화	91	85
개오동나무	85	30	물갠나무	66	34
거제수나무	74	35	물오리나무	60	29
계수나무	89	38	물참나무	85	67
고로쇠나무	89	26	물푸레나무	93	47
괴불나무	93	68	박달나무	76	21
구상나무	83	27	박태기나무	92	62
굴참나무	75	57	밤나무	96	61
까마귀밥여름나무	95	54	방크스소나무	84	67
까치박달나무	96	36	백당나무	98	65
낙엽송	90	40	백합나무	86	9
낙우송	72	11	버지니아소나무	90	80
난티나무	84	19	벗나무	98	62
난티잎개암나무	88	49	벽오동나무	97	66
노간주나무	76	48	복자기나무	97	26
노린재나무	96	37	복장나무	91	41
누리장나무	96	47	분비나무	82	32
노각나무	87	41	붉가시나무	97	65
눈측백	78	44	붉나무	96	76
느릅나무	84	36	비수리	96	66
느티나무	95	61	비술나무	80	23
다릅나무	83	70	비자나무	98	61
달피나무	88	32	뽕죽잎오리나무	73	25
당단풍나무	86	42	사방오리나무	61	21
독일가문비	90	80	사스레나무	75	45

수 종	순량율	발아율	수 종	순량율	발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사철나무	87	17	족제비싸리	98	78
산수유	94	54	졸참나무	73	82
산겨릅나무	89	63	좀잎산오리나무	26	23
산딸나무	96	52	종비나무	85	75
산사나무	91	32	주목	96	55
산오리나무	60	29	주엽나무	85	66
산초나무	95	60	중국굴피나무	91	46
살구나무	98	80	쥐똥나무	78	62
삼나무	89	32	쪽동백	98	58
상수리나무	89	57	짚래꽃	90	57
생강나무	95	62	찰피나무	92	16
생달나무	93	55	참싸리	89	51
서어나무	95	16	참죽나무	70	53
소나무	93	87	측백나무	86	84
수수꽃다리	63	65	층층나무	95	28
쉬나무	90	65	쑤	96	48
스트로브잣나무	92	80	테다소나무	95	90
신갈나무	78	52	팔배나무	67	50
싸리	93	52	팽나무	94	73
아까시나무	90	64	편백	91	12
야광나무	82	65	푸조나무	94	60
약밤나무	99	63	풀싸리	85	31
염주나무	97	5	풍개나무	97	54
오갈피나무	95	50	피나무	91	9
오동나무	78	67	함박꽃나무	95	55
옷나무	97	38	해송	96	92
은행나무	98	66	향나무	92	29
음나무	72	11	헛개나무	95	32
이나무	98	63	호도나무	97	66
이팝나무	95	60	화백	74	31
일본목련	97	67	화살나무	84	77
잎갈나무	85	49	황벽나무	93	65
자귀나무	94	56	회양목	96	48
자작나무	78	14	회화나무	87	55
잣나무	98	64	히어리	95	39
전나무	93	25			

양묘사업기준일람표

[별표 5]

수종별	구분	요소	과석	엽가	퇴비	상균제		상충제		진착제	질				발	철사	못	허공량	생장기 및 이식본수	특요 본수
						(토양) 다져 가래	(일반) 유산동 생석회	(토양) 지오 렉스	(일반) 디프 테렉스		일부용	포장용	방한용	일부용						
가문비나무	1-0	30	70	15	5	3(1)	3.75(3)	5(1)	-	0.04(3)	0.6	-	4	2.2	0.33	2	25.7	800	700	
	2-0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	-	-	700	560	
	3-0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	-	-	560	450	
	3-1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	-	-	-	81	57	
	3-2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	-	-	81	65	
	접목	30	70	15	-	-	3.75(1)	-	-	0.04(1)	-	3.75	6kg/ 100본	-	-	2	-	36	30	
소나무	대목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	-	-	-	30	
	파종 용기 (2-0)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3.75	-	2.2	-	-	13.3 2월/월	600 1.6본/월	500 1본/월	
거제수	이식	30	70	15	-	-	3.75(1)	5(1)	-	0.04(1)	-	3.75	-	-	-	-	-	90	72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2.2	-	-	19.4	150	120	
갈참나무	1-1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	-	-	64	58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	-	-	772.9	90	72	
나뭇잎	파종 용기 (2-0)	30	70	15	2	3(1)	3.75(5)	5(1)	-	0.04(5)	0.6	3.75	-	2.2	0.33	2	20.1 4월/월	600 1.4본/월	500 1본/월	
	이식	30	70	15	1	-	3.75(1)	5(1)	-	0.04(1)	-	3.75	-	-	-	-	-	64	50	
노티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2.2	-	-	20	81	65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	-	-	64	49	

수종별	구분	요소	과식	엽가	퇴비	살균제		살충제		진착제	질				세끼		발	철사	못	피중량	생합기원 및 이식본수	특묘 본수	
						(토양) 다져가렌	(일반) 유산동생회	(토양) 지오렐스	(일반) 디프테릭스		일복용	방한용	일복용	포장용	일복용	포장용							말목
		gr/m ³	gr/m ³	gr/m ³	kg/m ³	cc/m ³	gr/m ³	gr/m ³	gr/m ³	gr/m ³	gr/m ³	kg/m ³	kg/콘포	kg/m ³	kg/m ³	m/m ³	m/m ³	m/m ³	gr/m ³	gr/m ³	gr/m ³	gr/m ³	gr/m ³
대나무	평균	6	7	-	-	-	-	5(1)	-	-	-	-	0.3본	-	-	-	-	-	-	-	8	6	
대추나무	본일	30	70	15	-	-	3.75(4)	-	-	0.04(4)	-	3.75	-	-	-	-	-	-	-	-	10	8	
독일가문비	파종	30	70	15	5	3(1)	3.75(3)	5(1)	-	0.04(3)	-	4	-	2.2	0.33	0.7	2	20.0	600	600	480		
	2-0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	-	-	-	-	480	400		
	2-1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	-	-	-	-	-	81	-		
	2-2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	-	-	-	-	81	57		
	2-3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	-	-	-	-	81	65		
	2-2-2	20	23	15	-	-	3.75(1)	-	-	0.04(1)	-	-	-	-	-	-	-	-	-	16	11.2		
들메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2.2	-	-	-	20.6	90	90	72		
	1-1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	-	-	-	-	64	51		
북브라참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2.2	-	-	-	500	90	90	72		
리기다소나무류	파(유)종(성)	30	70	15	2	3(1)	3.75(3)	5(1)	-	0.04(3)	-	3.75	-	2.2	-	-	-	유20.8 성15.6	600 200	600 200	540 160		
	이식	30	70	15	-	-	3.75(1)	5(1)	-	0.04(1)	-	3.75	-	-	-	-	-	-	-	90	77		
물감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2)	5(1)	0.5(1)	0.04(12)	-	3.75	-	2.2	-	-	-	30.4	100	100	80		
물푸레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	-	-	-	22.8	90	90	72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	-	-	-	-	64	51		
박달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2.2	-	-	-	8.9	100	100	80		
버기다소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3)	5(1)	-	0.04(3)	-	3.75	-	2.2	-	-	-	20.0	600	600	500		
	1-1	30	70	15	-	-	3.75(1)	5(1)	-	0.04(1)	-	3.75	-	-	-	-	-	-	-	90	77		

수	종	별	구분	요소	과석	염가	퇴비	살균제		살충제		점독자제		질			세		밀목	발	찰사	못	과중량	생장기준 및 이식본수	특	묘		
								(토양 다져 가릴 거센)	(일 반) 유 산 동 성 석 회	(포양 지오 렉스)	(밀반) 디프 테레스	전체	비닐 테프	파리엔	일복용	포장용	병원용	일복용									포장용	kg/㎡
밭	나	무	저점목	50	230	30	-	43.75(5)	-	-	0.04(5)	20	0.2	-	3.75	20kg/100본	-	10	0.4	-	2	2	-	-	20	14		
				50	230	30	-	3.75(5)	-	-	0.04(5)	20	0.2	-	-	3.75	'	-	10	0.4	-	2	2	-	-	12	7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1kg/100본	-	-	-	-	-	-	-	320.0	25	20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	-	-	-	-	-	-	-	507.0	49	39	
본	나	무	고점대 목(1-0)	30	70	15	3	3.75(1)	5(1)	-	0.04(1)	-	-	-	-	-	-	-	-	-	-	-	-	-	15	12		
				30	70	15	5	3(1)	3.75(3)	5(1)	-	0.04(3)	-	-	-	0.6	-	4	1.2	0.33	0.7	2	2	105.3	800	700		
				20	23	15	-	-	3.75(1)	-	-	0.04(1)	-	-	-	-	3.75	-	10	-	-	-	-	-	-	700	560	
				20	23	15	-	-	3.75(1)	-	-	0.04(1)	-	-	-	-	3.75	-	10	-	-	-	-	-	-	-	560	450
비	파	나	무	30	70	15	5	3.75(1)	5(1)	-	0.04(1)	-	-	-	3.75	-	10	-	-	-	-	-	-	-	81	57		
				20	23	15	-	-	3.75(1)	-	-	0.04(1)	-	-	-	-	3.75	-	10	-	-	-	-	-	-	81	65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3.75	-	10	-	-	-	-	-	-	-	30	
				30	70	15	2	3(1)	3.75(12)	5(1)	0.5(1)	0.04(12)	-	-	-	0.6	3.75	-	10	-	-	-	-	-	-	28.8	-	30
산	수	유	파	30	70	15	2	3.75(1)	5(1)	-	0.04(1)	-	-	-	3.75	-	10	-	-	-	-	-	-	-	100	120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3.75	-	10	-	-	-	-	-	-	64	51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0.6	3.75	-	10	-	-	-	-	-	-	100	70	
				30	70	15	2	3(1)	3.75(12)	5(1)	0.5(1)	0.04(12)	-	-	-	0.6	3.75	-	10	-	-	-	-	-	-	21.4	100	85
살	구	나	무	50	230	30	-	3.75(1)	-	-	0.04(1)	-	-	-	-	-	-	-	-	-	2	-	-	20	14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3.75	'	-	0.4	-	-	-	-	-	25	20	

수종별	구분	요소	파석	염가	퇴비	살균제		살충제		진착제	질				발	철사	못	피중량	생장기준 및 이식본수	특요 본수		
						(도양) (일반) 유산동성적화	(도양) (일반) 지오 디프 렉스	(도양) (일반) 지오 디프 렉스	(일반) 디 프 테릭스		일복용	포장용	방관용	일복용							포장용	
삼 나 무	패종	30	70	15	2	3(1)	3.75(11)	5(1)	-	0.04(11)	0.6	3.75	-	2.2	10	1.2	0.33	0.7	2	23.3	500	400
상수리 나 무	패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	10	-	-	-	-	479.2	50	40
수원포플러	C1/1	30	188	30	30	-	1.2(1)	5(1)	0.16(4)	0.04(1)	-	3.75	-	-	10	-	-	-	-	-	16	8
스트로브차나무	1-1	30	70	15	2	-	3.75(1)	5(1)	-	0.04(1)	-	-	-	-	-	-	-	-	-	-	120	92
신갈 나 무	패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3)	-	3.75	-	-	10	-	-	-	-	406.4	64	51
아 까 시	패종	30	70	15	15	3(1)	-	5(1)	0.5(1)	-	-	3.75	-	-	10	-	-	-	-	-	12	8
오 동 나 무	본조	30	70	17	17	-	3.75(2)	5(1)	-	0.04(2)	-	3.75	-	-	10	-	-	-	-	-	6	4
웃나무(불나무)	패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2.2	10	-	-	-	-	-	129.6	54
은 행 나 무	1-0	30	70	15	2	3(1)	3.75(4)	5(1)	-	0.04(4)	-	-	-	-	-	-	-	-	-	122.8	100	70
							3.75(2)			0.04(2)		3.75			10						20	20

수종별	구분	요소	과석	염가	퇴비	살균제		살충제		진착제	질				발	침사	못	피종양	생합/분 및 이서분수	녹묘 본수
						(토양) 다찌 가렐	(일반) 유산동 정석회	(토양) 지오 렉스	(일반) 디포 테렉스		일복용	포장용	병환용	일복용						
을 나 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kg/㎡	kg/㎡	㎡/㎡	-	-	9.1	81	65
		30	138	30	수석회 25	-	41.2(1)	5(1)	0.16(4)	0.04(1)	-	3.75	-	2.2	10	-	-	-	12	8
차 작 나 무	파종	20	46	10	수석회 25	-	1.2(1)	5(1)	0.16(4)	0.04(1)	-	3.75	-	-	10	-	-	-	8	5
		30	70	15	2	3(1)	3.75(1)	5(1)	-	0.04(3)	0.6	3.75	kg/㎡	kg/㎡	㎡/㎡	-	-	4.2	81	65
갯 나 무	파종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2.2	10	-	-	-	64	51
		30	70	15	5	3(1)	3.75(3)	5(1)	-	0.04(3)	0.6	-	4	2.2	-	0.33	2	334.2	400	320
전 나 무	파종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120	84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320	128
전 나 무	파종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200	160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120	96
전 나 무	파종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16	12.8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	4	2.2	-	0.33	2	420.3	800	700
전 나 무	파종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700	560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560	450
전 나 무	파종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	10	-	-	-	81	-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81	57
전 나 무	파종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81	61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12	8.4
전 나 무	파종	10	70	15	1	3(1)	3.75(12)	5(1)	0.5(1)	0.04(12)	0.6	3.75	-	2.2	10	-	-	-	100	80
		-	-	-	-	-	-	-	-	-	-	-	-	-	-	-	-	-	144	120
전 나 무	파종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3.75	-	2.2	10	-	-	30.0	200	160

수종별	구분	요소	과석	엽가	퇴비	살균제		살충제		진			세끼		발	철사	못	파종량	생장기준 및 이식본수	특요 본수	
						(트양) 다찌 가렌	(일반) 유산동 생석회	(트양) 지오 렉스	(일반) 디프 테렉스	일부용	포장용	방관용	일부용	포장용							말목
편백	파종 용기 (2-0)	30	70	15	2	3(1)	3.75(5)	5(1)	-	0.04(5)	0.6	3.75	kg/콘포	m/콘포	0.33	0.7	2	35.8 14립/월	본/㎡ 550 1.5본/월	450 1본/월	
		30	70	15	3	-	3.75(4)	5(1)	-	0.04(4)	-	3.75	-	10	-	-	-	-	-	64	45
피나	이식	30	70	15	3	-	3.75(2)	5(1)	-	0.04(2)	-	3.75	-	10	-	-	-	-	-	49	45
		30	70	15	3	-	3.75(1)	-	-	0.04(1)	-	-	-	3.4	-	-	-	-	-	16	12.8
피혜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10	-	-	-	191.0	64	51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3.75	-	10	-	-	-	32.1	600	540	
흰사시나무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10	-	-	-	-	90	72	
		30	138	30	소석회 25	-	1.2(1)	5(1)	0.16(4)	0.04(1)	-	3.75	-	10	-	-	-	-	16	8	
호두나무 (가래나무)	C1/2	10	46	10	소석회 25	-	1.2(1)	5(1)	0.16(4)	0.04(1)	-	3.75	-	10	-	-	-	-	6	5	
		30	70	15	6	3(1)	3.75(4)	5(1)	-	0.04(4)	-	3.75	-	10	-	-	-	호두720 가래750	36	29	
화백	점목	50	230	-	-	-	3.75(4)	-	-	0.04(4)	-	3.75	-	10	-	2	2	-	16	4	
		30	70	15	2	3(1)	3.75(5)	5(1)	-	0.04(5)	0.6	3.75	-	10	0.33	0.7	23.8	600	480		
백합나무	이식	30	70	15	3	-	3.75(4)	5(1)	-	0.04(4)	-	3.75	-	10	-	-	-	-	64	45	
		30	70	15	2	3	-	-	5	-	0.6	-	-	2.2	-	-	100	50	35		
백합나무	노년파종 (1-0) 야생(1-1) 온실파종 2개월 후 이식	30	70	15	2	3	-	5	-	0.6	-	-	2.2	-	-	-	-	-	25	20	
		30	70	15	2	3	-	-	5	-	0.6	-	-	2.2	-	-	100	154	123		
		30	70	15	2	3	-	5	-	0.6	-	-	2.2	-	-	-	-	50	35		

[별표 6]

양묘사업공정일람표

수종별	구분	공정															
		경운	정지	조상	파종	이식	접삼목	시비	양계 살포	체초	숙음	결순 따기	감득	관수	배수로 수리	일부 시설	일부 제거
가문비나무 (독일가문비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파종	12,080	300	50	30	-	-	300	㎡/9인일 수량2,500	60	30	-	㎡/1인	600	1,400	130	210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	100	-	-	10,000	600	1,400	-	-
감나무	거리	-	-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대목	12,080 중량비 200	500	80	100	-	-	300	'	100	-	400	20,000	600	1,400	-	-
소나무	접목	-	-	-	-	-	-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목	12,080	500	50	40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거제수	이식	12,080	500	80	30	15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파종	12,080	500	40	3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굴참나무	이식	12,080	500	80	-	15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파종	12,080	500	80	50	-	-	300	'	60	-	-	20,000	600	1,400	-	-
낙엽	이식	12,080	300	40	30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130	210
	파종	12,080	300	80	50	-	-	500	'	100	-	-	10,000	600	1,400	-	-
느티나무	이식	12,080	500	80	5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파종	12,080	500	80	50	-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대추나무	이식	12,080	400	100	-	-	-	400	'	100	-	-	20,000	600	1,400	-	-
	파종	12,080	500	100	-	-	-	400	'	100	-	400	20,000	600	1,400	-	-
들메나무	파종	12,080	500	80	50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이식	12,080	500	80	-	-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무브라참나무	파종	12,080	500	80	50	-	-	300	'	60	-	-	20,000	600	1,400	-	-
	이식	12,080	500	80	-	-	-	300	'	60	-	-	20,000	600	1,400	-	-
리기대소나무 (테에다)	파종	12,080	500	50	40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물푸레나무	파종	12,080	500	80	50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이식	12,080	500	80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박달나무	파종	12,080	500	40	3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이식	12,080	500	40	-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수종별	구분	1 인 1 일 1 공 1 정											일부 시칠	일부 제거		
		경운	장지	조상	파종	이식	점검목	시비	약제 살포	제조	숙음	결순 따기			감독	관수
밤	나 무	12,080	500	80	50	-	-	300	m ² /3인1일 [살포2,500 [농2,500	m ²	-	400	m ² /1인	m ²	m ² /3인1일	m ²
		-	-	-	-	-	점450본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버지니아소나무	1-1	12,080	500	80	50	-	-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	-	-	30	점400본	500	"	100	-	400	10,000	600	1,400	-
비파나 무	과종	12,080	500	50	40	-	-	300	"	60	-	20,000	600	1,400	-	-
		12,080	500	80	-	15	-	500	"	100	30	-	20,000	600	1,400	-
사스레나무	과종	12,080	500	40	100	-	-	300	"	60	-	20,000	600	1,400	-	-
		12,080	500	40	3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살구나 무	과종	12,080	500	80	50	-	-	300	"	100	-	20,000	600	1,400	-	-
		12,080	500	80	50	15	-	300	"	60	-	20,000	600	1,400	-	-
삼나 무	과종	-	-	-	-	-	-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12,080	300	40	30	-	점450본	300	"	60	30	-	10,000	600	1,400	130
상수리나 무	과종	12,080	300	80	50	15	-	500	"	100	-	20,000	600	1,400	-	-
		12,080	500	80	50	-	-	300	"	60	-	20,000	600	1,400	-	-
수원포플러	C1/2	12,080	500	80	-	15	-	300	"	100	-	20,000	600	1,400	-	-
		12,080	500	100	-	-	900본	600	토양살충2,500 일만3,000 3인1일	200	-	500	30,000	600	1,400	-
스트로브차나무	과종	12,080	500	50	30	-	-	300	m ² /3인1일 [살포2,500 [농2,500	60	40	-	10,000	600	1,400	130
		12,080	500	80	-	15	-	500	"	100	-	10,000	600	1,400	-	-
신갈나 무	과종	-	-	-	-	-	-	500	"	100	-	20,000	600	1,400	-	-
		12,080	500	80	50	-	-	300	"	60	-	20,000	600	1,400	-	-
양향철나무	C1/2	12,080	500	80	50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12,080	500	100	-	-	900본	600	토양살충2,500 일만3,000 3인1일	200	-	500	30,000	600	1,400	-

수종별	구분	1 인 일 공 정											일부 계기	일부 시설	일부 계기		
		경운	정지	조상	파종	이식	접삼목	시비	약제 살포	체초	숙음	결순 따기				감독	관수
오동	분근, 실생	12,080	500	80	-	50	-	300	m ³ /3인1일 살포2,500 [살포2,500]	200	-	-	20,000	600	1,400	-	-
오리나무	파종	12,080	300	40	30	-	300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옥수수	파종	12,080	500	50	50	-	300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유동	파종	12,080	500	80	50	-	300	300	'	60	-	-	20,000	600	1,400	-	-
유나무	파종	12,080	500	80	30	-	300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이태리포플라	C1/2	12,080	500	100	-	-	900본	600	토양살포2,500 일반3,000 3인1일	200	-	-	30,000	600	1,400	-	-
자작나무	C1/2	12,080	500	100	-	-	400*	600	'	200	-	-	30,000	600	1,400	-	-
자작나무	파종	12,080	500	40	30	-	-	300	m ³ /3인1일 살포2,500 [살포2,500]	60	20	-	20,000	600	1,400	-	-
자작나무	이식	12,080	500	80	-	15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자작나무	파종	12,080	500	50	30	-	300	300	'	60	40	-	10,000	600	1,400	130	210
자작나무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	100	-	-	10,000	600	1,400	-	-
자작나무	거치	12,080	500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자작나무	파종	12,080	300	50	30	-	-	300	'	60	40	-	10,000	600	1,400	130	210
자작나무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	100	-	-	10,000	600	1,400	-	-
자작나무	거치	12,080	500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자작나무	파종	12,080	500	80	50	-	500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자작나무	파종	12,080	300	40	30	-	300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자작나무	이식	12,080	300	80	-	15	-	500	'	100	-	-	20,000	600	1,400	130	210
자작나무	거치	12,080	500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자작나무	파종	12,080	500	80	50	-	500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자작나무	파종	12,080	500	50	40	-	300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자작나무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자작나무	C1/2	12,080	500	100	-	-	900*	600	토양살포2,500 일반3,000 3인1일	200	-	-	30,000	600	1,400	-	-
자작나무	C1/2	12,080	500	100	-	-	400*	600	'	200	-	-	30,000	600	1,400	-	-

수종별	구분	1 인 1 일 1 공 1 정										일부 채거					
		경운	정지	조상	파종	이식	접삼목	시비	약제 살포	체초	숙음		결순 따기	감득	관수	배수로 수리	일부 시설
호두나무(가래) 화 백 백합나무	파종	12,080	500	80	40	-	-	300	m ³ /3인1일 [평균2,500 [살중2,500	m ³	-	-	m ³ /1인	600	1,400	-	-
	파종	12,080	300	40	30	-	-	300	"	30	-	10,000	600	1,400	130	-	
	이식	12,080	300	80	-	15	-	500	"	-	-	20,000	600	1,400	-	-	
	파종	12,080	300	40	40	-	-	300	2,500	30	-	10,000	600	1,400	-	-	
	이식	12,080	300	80	-	15	-	500	2,500	-	500	20,000	600	1,400	-	-	

수종별	구분	1인1일공정			사업계획						수			결순 따기
		굴취	신묘 결속기식	포장	경운	시비	토양검진	토양검진 토양검중	일반살균	일반살중	체초	수음	관수	
가문비나무 (독일가문비,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과	㎡	본	곤포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
	이	-	-	-	2	2	1	3	-	7	1	7	2	2
감나무	저	30	5,000 (2-0포합)	10	2	2	1	1	-	6	-	4	2	-
	대	20	3,500	-	-	1	1	1	-	6	-	7 ^{2,2} [^{2,2} 4]	-	-
소나무	점	30	1,000	10	-	1	1	1	-	5	-	7	2	2
	파	20	7,000	15	2	1	3	-	7	3	7	2	2	-
거제수	이	30	4,000	10	2	2	1	1	-	6	-	2	2	-
	파	30	4,000	10	2	2	1	1	-	6	3	4	2	-
굴참나무	파	20	4,000	10	2	2	1	1	-	6	-	4	2	-
	파	20	7,000	15	2	2	1	5	-	7	3	7	2	-
낙엽송	이	30	4,000	10	2	2	-	1	-	6	-	7	2	-
	파	30	4,000	10	2	2	1	1	-	6	-	4	2	-
느티나무	과	30	4,000	10	2	2	1	1	-	6	2	4	2	-
	이	30	4,000	10	2	2	1	1	-	6	-	2	2	-
대나무	편	400	-	5,000본	2	4	-	-	-	6	-	2	2	-
	근	100	1,000	10	2	4	-	4	-	5	-	4	2	-
대추나무	월	30	4,000	10	2	2	1	1	-	6	3	4	2	-
	파	30	4,000	10	2	2	1	1	-	6	-	4	2	-
물푸레나무	과	30	4,000	10	2	2	1	1	-	6	-	4	2	-
	과	30	4,000	10	2	2	1	1	-	6	-	4	2	-
리기대소나무류 (해다)	과	10	7,000	15	2	1	1	3	-	7	3	4 ^(우7)	2	-
	이	30	4,000	10	2	2	1	1	-	6	-	2	2	-
물푸레나무	과	30	4,000	10	2	2	1	1	-	6	2	4	2	-
	이	30	4,000	10	2	2	1	1	-	6	-	2	2	-
박탈나무	과	30	4,000	10	2	2	1	1	-	6	-	2	2	-
	과	30	4,000	10	2	2	1	1	-	6	3	4	2	-

수	종	별	구	1 인 1 일 공 정			사						수				결	순	머	기
				골	척	척	시	비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밤	나	무	저점대목	-	-	-	2	2	1	1	1	-	6	-	-	-	4	2	2	2
			저점대목	30	300	10	-	2	-	-	5	-	6	-	-	7	2	2	2	
			교점대목	30	2,000	-	2	2	1	1	-	6	-	-	-	4	2	2	2	
			1-0	-	-	-	2	2	-	-	-	6	-	-	-	4	2	2	2	
			1-1	30	300	10	-	1	-	-	5	-	6	-	-	7	2	2	2	
			고점대목	20	7,000	15	2	2	1	1	3	-	7	-	-	7	2	2	2	
			교점대목	30	4,000	10	2	2	-	-	1	-	6	-	-	2	2	2	2	
			교점대목	30	5,000	10	2	2	1	1	1	-	6	-	-	4	2	2	2	
			교점대목	30	4,000	10	2	2	1	1	1	-	6	-	-	4	2	2	2	
			교점대목	-	-	-	2	2	1	1	1	-	6	-	-	4	2	2	2	
			교점대목	30	300	10	-	1	-	-	1	-	6	-	-	7	2	2	2	
			교점대목	20	7,000	15	2	2	1	1	11	-	7	-	-	7	2	2	2	
			교점대목	30	4,000	10	2	2	-	-	10	-	6	-	-	7	2	2	2	
			교점대목	20	4,000	10	2	2	1	1	1	-	6	-	-	2	2	2	2	
			교점대목	30	4,000	10	2	2	1	1	1	-	6	-	-	2	2	2	2	
			교점대목	250본	800	800	2	2	-	-	1	4	5	-	-	2	2	2	2	
			교점대목	-	-	-	2	2	1	1	3	-	7	-	-	7	2	2	2	
			교점대목	30	5,000	10	2	2	-	-	1	-	6	-	-	4	2	2	2	
			교점대목	20	3,500	10	-	2	-	-	1	-	6	-	-	7(2-2.4)	2	2	2	
			교점대목	20	4,000	10	2	2	1	1	1	-	6	-	-	4	2	2	2	
			교점대목	30	4,000	10	2	2	1	1	-	5	-	-	2	2	2	2	2	
			교점대목	250본	800	800	2	2	-	-	1	4	5	-	-	2	2	2	2	

수종	수종별	구분	1인1일공정		사		회		수		결순 마기						
			굴취	선묘 결속가식	포장	경순	시비	토양살균	도양살균	약제		살포	제초	수음	관수	배수로	
오동	나무	분근,실생	㎡	본	콘포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
오리나	무	파	50㎡	1,000	10	2	2	1	2	12	2	6	6	4	2	2	-
웃나	무	파	30	4,000	10	2	2	1	12	12	3	7	7	7	2	2	-
유동	나무	파	30	2,000	10	2	2	1	1	1	1	6	6	4	2	2	-
음	나무	파	50	-	10	2	2	1	-	-	-	6	6	4	2	2	-
이태리	풀러	파	30	4,000	10	2	2	1	1	1	3	6	6	4	2	2	-
자작	나무	C1/1	250본	800	800본	2	2	-	1	1	1	5	5	2	2	2	-
작	나무	C1/2	200"	600	600	2	2	-	1	1	1	4	4	2	2	2	-
갓	나무	파	30	4,000	10	2	2	1	1	1	3	6	6	4	2	2	-
	나무	이식	30	4,000	10	2	2	1	1	1	1	6	6	4	2	2	-
	나무	파종	-	-	-	2	2	1	1	1	1	7	7	7	1	1	-
	나무	이식	30	5,000(2-0포함)	10	2	2	-	1	1	1	6	6	4	2	2	-
	나무	거치	20	3,500	10	-	2	1	1	3	1	7	7	7	2	2	-
	나무	파종	-	-	-	2	2	1	1	1	1	6	6	4	2	2	-
	나무	이식	30	5,000(2-0포함)	10	2	2	-	1	1	1	6	6	4	2	2	-
	나무	거치	20	3,500	10	-	2	1	1	1	1	6	6	4	2	2	-
	나무	파종	30	4,000	10	2	2	1	1	1	1	6	6	4	2	2	-
	나무	파종	20	7,000	15	2	2	1	1	5	2	7	7	7	2	2	-
	나무	이식	30	4,000	10	2	2	-	1	1	1	6	6	4	2	2	-
	나무	거치	20	3,500	10	-	2	1	1	4	1	6	6	4	2	2	-
	나무	파종	30	4,000	10	2	2	1	1	1	1	6	6	4	2	2	-
	나무	파종	20	7,000	15	2	2	1	1	3	2	7	7	7	2	2	-
	나무	이식	30	4,000	10	2	2	-	1	1	1	6	6	4	2	2	-
	나무	C1/1	250"	800	800	2	2	-	1	1	1	5	5	2	2	2	-
	나무	C1/2	200"	800	800	2	2	-	1	1	1	4	4	2	2	2	-
	나무	파	30	2,000	10	2	2	1	1	1	1	6	6	4	2	2	-
	나무	파	20	7,000	15	2	2	1	1	4	3	7	7	7	2	2	-
	나무	이식	30	4,000	10	2	2	-	1	1	1	6	6	4	2	2	-
	나무	파종	30	4,000	10	2	2	1	1	1	1	6	6	4	2	2	-
	나무	파종	20	7,000	15	2	2	1	1	3	2	7	7	7	2	2	-
	나무	이식	30	4,000	10	2	2	-	1	1	1	6	6	4	2	2	-
	나무	C1/1	250"	800	800	2	2	-	1	1	1	5	5	2	2	2	-
	나무	C1/2	200"	800	800	2	2	-	1	1	1	4	4	2	2	2	-
	나무	파	30	2,000	10	2	2	1	1	1	1	6	6	4	2	2	-
	나무	파	20	7,000	15	2	2	1	1	4	3	7	7	7	2	2	-
	나무	이식	30	4,000	10	2	2	-	1	1	1	6	6	4	2	2	-

수종별	구분	1인1일공경		사업회수							결순 따기			
		굴취 ㎡	선묘 결속가식	포장 곤포	경운 회	시비 회	약제살포		제조 회	숙음 회		관수 회	배수로 수	
							토양살균 회	토양살충 회						일반살균 회
백합나무	이식	20	4,000	10	2	2	1	1	-	6	-	4	2	-

수종별	구분	유묘상자	페트포스	펠라이트	버뮤클라이트	복합	피복용 버닐
백합나무	온실과중	상자/㎡ 6	포/100상자 3 ※1포 : 113ℓ	포/100상자 4 ※1포 : 100ℓ	포/100상자 20 ※1포 : 20ℓ	포/100상자 20	㎡/㎡ 1.5

[별표 7]

산림용 묘목 규격표

수 종	묘 령	간 장	근원경	근 장	비 고
		cm이상	mm이상	cm이상	
가 래 나 무	1-0	15	8		
가문비나무	3-1	22	7	20	
	3-2	28	7	23	
가 중 나 무	1-0	21	3		
	1-1	42	8	25	
갈 참 나 무	1-1	30	6		
감 나 무	접목1	45	8	20	
소 나 무	1-1	16	5	18	
	용기묘(2-0)	25	3		
거제수나무	1-0	22	2		
	1-1	40	5	25	
고로쇠나무	1-0	32	4		
	1-1	62	5		
구 상 나 무	1-0	4	1		
	2-0	6	2		
	2-2	18	5		
	2-3	22	7		
굴 참 나 무	1-0	25	4	23	
	1-1	38	6	25	
낙 엽 송	1-0	25	3	18	
	1-1	35	6	20	
	용기묘(1-0)	20	3		
	용기묘(2-0)	46	6		
난 티 나 무	1-0	20	2		
	1-1	94	6		
노 각 나 무	1-1	30	4		
	1-1-1	58	9		
느 립 나 무	1-0	23	3		
		120	8		
느 티 나 무	1-0	42	3	25	
	1-1	90	7	27	
다 립 나 무	1-0	16	3		
	1-1	31	4		
단 풍 나 무	1-0	11	2		
당 단 풍	1-0	11	2		

플라스틱 24구 용기
(320ml/구,
φ6.4*13cm/구)

수 종	묘 령	간 장	근원경	근 장	비 고
독일가문비		cm이상	mm이상	cm이상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 이상
	2-2	35	8	18	
	2-3	55	10	20	
	2-2-2	60~79	10	24	
		80이상	10	30	
두 립 나 무	1-1	50	7		
두 층 나 무	1-0	26	3		
	1-1	51	5		
들 매 나 무	1-0	12	2		
	1-1	30	5	20	
	1-1-1	40	7		
루브라참나무	1-0	25	5	20	
	1-1	30	6	30	
리기다소나무	1-0	15	4	15	
리기테다소나무	1-1	25	6	18	
	1-0	15	3	15	
마 가 목	1-1	30	5	20	
	1-0	22	3		
말채나무	1-1	35	6		
	1-0	44	4		
	1-1	58	5		
물 갠 나 무	1-0	18	5		
물오리나무	1-0	18	5		
물푸레나무	1-0	25	6	20	
	1-1	41	7	26	
박 달 나 무	1-0	58	4		
	1-1	70	7		
밤 나 무	대목1-0	70	8	20	
			8		
	대목1-1	120	(지상30cm)	25	o 간장 : 접합부로 부터 의 길이
	저접1	50	8	20	o 근원경 : 접수의 직경
	고접1	50	10	25	o 접합부의 유합이 완 전한 것
	유접1	45	6	15	o 묘간부가 절단되지 않은 것
백 합 나 무	1-0		8		
	1-1		9		
버지니아소나무	1-0	8	1		
	1-1	25	4	20	
복 자 기	1-0	19	3		
분 비 나 무	1-1	24	4		
	3-1	18	5	18	
	3-2	22	7	20	

수 종	묘 령	간 장	근원경	근 장	비 고
		cm이상	mm이상	cm이상	
사방오리나무	1-0	18	5		
사스레나무	1-0	11	2		
	1-1	35	5	25	
산 딸 나무	1-0	35	4		
	1-1	44	5		
산 수 유	1-1	58	6		
산 벗 나무	1-0	28	3		
살 구 나무	접1	50	6	25	
삼 나무	1-1	27	5	18	
	1-1-1	35	7	20	
상수리나무	1-0	28	5	23	
	1-1	39	7		
	용기(1-0)	28	3		
세로티나벗나무	1-0	26	2		
수원포플러	C1/1	180	11	20	
스트로브잣나무	1-0	4	1		
	1-1	7	2		
	1-2	23	6	20	
	2-0	9	2	17	
	2-1	33	7		
신 갈 나무	1-0	26	3	23	
	1-1	37	5		
아까시나무	1-0	35	5		근류균피가 부착되어 야 함
	1-1	80	7	20	
양황철나무	C1/1	210	12	20	
오 동 나무	분근1	70	20	25	
	실생1	50	15	20	
	차상묘	-	6	20	
오 리 나무	1-0	18	5	18	오리나무류는 근류균피 가 부착되어야 함
욱 나무	1-0	18	5		
	1-1	50	7		
은 행 나무	1-0	10	4		
	1-1	18	5		
	2-0	30	7	15	
음 나무	1-0	20	3	20	
	1-1	21	6		
이태리포플러	C1/1	220	10	20	근원경 50cm의 직경
	C1/2	300	18	30	
자 작 나무	1-0	40	5	25	
	1-1	67	5	25	

수 종	묘 령	간 장	근원경	근 장	비 고
잣 나무	2-0	13	3	15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3-0	18	5	15	
	2-1	16	4	15	
	2-2	22	6	18	
	2-3	32	8	20	
	2-2-3	60~79	10	28	
		80이상	10	34	
전 나무	1-0	4.0	1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2-0	6.0	2		
	2-1	9.0	4	18	
	2-2	18	5	20	
	2-3	22	7	32	
	2-2-3	60~79	11	38	
졸 참 나무	1-1	35	6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0	18	5		
	1-2	10	2		
	2-1	16	3		
	3-2	37	6		
좀잎산오리나무	1-0	30	4	15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0	55	5		
주 목	1-0	15	3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1	42	7		
쪽제비싸리, 참싸리	1-0	22	7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0	45	5		
쪽동백	1-1	56	5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0	20	4	15	
참 중 나무	1-1	27	6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1	27	4	18	
칠 엽 수	1-1-1	35	7	20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2-2	70~89	10	28	
층 층 나무		90이상	10	34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플라스틱 28구 용기 (300ml/구, Ø6.4*13cm/구)
	용기묘(2-0)	33	4		
태다소나무	1-0	25	7	25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1	40	10		
편 백	1-1	16	6	18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0	50	5		
해 송	C1/1	150	10	20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C1/2	180	15	25	
햇 개 나무	1-0	15	8	20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접1	15	8	20	
현사시나무	1-0	6	1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1	27	4	18	
호 두 나무	1-0	21	4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1	82	6		
화 백	C1/1	210	12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황 벽 나무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황 철 나무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별표 8]

곤포당 및 속당 묘목 본수표

수 종	묘 령	곤 포 당		속당본수	비고
		본 수	속 수		
		본	속	본	
감 나 무	접목1년	200	10	20	
소 나 무	1-1	1,000	50	20	
거 제 수	1-0	1,500	75	20	
낙 엽 송	1-1	500	25	20	
느 티 나 무	1-0	1,500	75	20	
	1-1	1,000	50	20	
대 추 나 무	접목·분얼묘	100	10	10	
독일가문비, 가문비나무	2-2	500	25	20	
들 메 나 무	1-0	1,000	50	20	
루브라참나무	1-0	1,000	50	20	
리기다소나무	1-1	1,000	50	20	
	1-0(성)	2,000	100	20	
리기테다소나무	1-1	800	40	20	
	1-0(성)	1,500	75	20	
물 푸 레 나 무	1-0	1,000	50	20	
	1-1	500	25	20	
박 달 나 무	1-0	1,500	75	20	
밤 나 무	접목1년	100	10	20	
버지니아소나무	1-1	1,000	50	20	
분 비 나 무	2-3	400	20	20	
사스레 나무	1-0	1,500	75	20	
살 구 나 무	접목1년	200	10	20	
	1-0(대목)	1,000	50	20	
삼 나 무	1-1	1,000	50	20	
상수리, 굴참, 신갈	1-0	1,000	50	20	
	1-1	500	25	20	

수 종	묘 령	곤 포 당		속당본수	비고
		본 수	속 수		
		본	속	본	
스트로브잣나무	2-1	1,000	50	20	
	2-2	500	25	20	
아 까 시	1-0	1,000	50	20	
음 나 무	1-0	1,500	75	20	
오 동 나 무	분근, 실생 (1년)	50	5	10	
오 리 나 무 류	1-0	2,000	100	20	
옷 나 무	1-0	1,000	50	20	
자 작 나 무	1-0	1,000	50	20	
	1-1	500	50	20	
잣 나 무	2-0	2,000	100	20	
	2-1	1,000	50	20	
	2-2	500	25	20	
전 나 무	2-2	500	25	20	
	2-3	400	20	20	
쪽제비나무, 참싸리	1-0	2,000	100	20	
테 다 소 나 무	1-1	800	40	20	
	1-0(성)	1,500	75	20	
편 백	1-1	1,000	50	20	
포 플 러 류	C1/1	80	8	10	
	C1/2	50	5	10	
피 나 무	1-0	1,500	75	20	
호 두 나 무	1-0	500	25	20	
	접목묘	300	15	20	
해 송	1-1	1,000	50	20	
화 백	1-1	1,000	50	20	
백 합 나 무	1-0	300	15	20	
	1-1	100	10	10	

[별지 제1호 서식]

채종림·수형목 지정·선정·해제 현황보고서 채종임분 지정·선정·해제									
구분	지정 번호	지정 년월일	지정 기간	소유별	지정·선정·해제 내용				
					구역 면적	수종	소재지	본수	수령
					ha			본	년

(190mm×268mm)

[별지 제2호 서식]

채종원 · 채수포조성실적보고						
구 분	조성 년월일	수종	소 재 지	조 성 실 적		종자(접·삽수) 채취가능 년도
				면 적	본 수	
				ha	본	

(190mm×268mm)

[별지 제3호 서식]

채종립등종자결실에찰조사보고					
구 분	산지번호	조 사 개 소	수 종	품·홍	채취가능량
					kg

(190mm×268mm)

[별지 제4호 서식]

산림용종자채취결과보고							
구 분	산지번호	산지구역	채취장소	수 종	계획량	채취량	채취기간
					kg	kg	

(190mm×268mm)

[별지 제5호 서식]

종 자 산 지 내 역			
1. 종 자 생 산 원	채종원 · 채종립 · 채종임분		
2. 채 취 장 소	(산지번호 : —)		
3. 수 종 명			
4. 수 령 (채종원조성년도)			
5. 종자채취일자			
6. 수 량			
7. 생 산 자	성 명		상호 또는 법인명
	주 소		
	종묘생산업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8. 기 타			
<p>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00 지방산림청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00 시·도지사 (인)</p> <p style="text-align: right;">00 시장·군수 (인)</p>			

(190mm×268mm)

[별지 제6호 서식(1)]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종자공급원	⑤ 산지번호	⑥ 산지구역	⑦ 수종	⑧ 채취장소	⑨ 검사목적
	kg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00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p>					
구비서류 : 종자산지내역 1부(별지 제5호 서식)					수수료
					원

(190mm×268mm)

[별지 제6호 서식(2)]

산림용종자검사결과통보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종 자 공급원	⑤ 산지 번호	⑥ 산지 구역	⑦ 수 종	⑧ 품질기준(%)		⑨ 검사결과(%)		⑩ 판정 (합격.불합격)	
				순량을	발아율	순량을	발아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20									
검사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인) 00 산림환경연구소장 (인)									
0 0 0 귀하									
붙임서류 : 종자품질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190mm×268mm)

[별지 제7호 서식(1)]

(1. 표 면)

양묘사업상황보고

1. 총괄

(단위 : ha, 천본)

① 구분	② 주체별	③ 생산자수 (명)	④ 포지보유면적	⑤ 사업면적	생산계획본수				
					⑥ 합계	대행생산지정			⑩ 기타
						⑦ 계	⑧ 중앙	⑨도·지방청 자체계획	
성묘	계								
	양묘업자 (개인)								
	양묘업자 (법인)								
	산림조합								
	환경연구소								
	지방청								
유묘	계								
	양묘업자 (개인)								
	양묘업자 (법인)								
	산림조합								
	환경연구소								
	지방청								

[별지 제7호 서식(2)]

(2. 이 면)

2. 성·유묘별, 주체별 :											
(단위 : 천본)											
① 구분	② 수종	③ 묘령	④ 종 자 공급원	⑤ 종자 산지 번호	사업량		생산계획본수				
					⑥ 종자 (kg)	⑦ 묘목	⑧ 합계	대행생산지정			⑫ 기타
								⑨ 계	⑩ 중앙 계획	⑪ 도·지방청 자체계획	
계											
성묘											
계											
유묘											

[별지 제8호 서식(1)]

(1. 표 면)

양묘 실태 조사 보고

1. 총괄

(단위 : 천본)

① 구분	② 주체별	생 산 계 획				생 산 실 적				⑤ 증감 (④-③)	
		합계	생산지정			합계	생산지정				
			③ 계	중앙	도· 지방청		비지 정	④ 계	중앙		도· 지방청
성묘	계										
	양묘업자 (개인)										
	양묘업자 (법인)										
	산림조합										
	환경 연구소										
	지방청										
유묘	계										
	양묘업자 (개인)										
	양묘업자 (법인)										
	산림조합										
	환경 연구소										
	지방청										

[별지 제8호 서식(2)]

(2. 이 면)

양묘실태조사보고												
(단위 : 천본)												
① 구분	② 수종	③ 묘령	④ 종자 공급 원	시업량		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증감 (⑥-⑤)
				종자 (kg)	본수	⑤ 지정	비지정	합계	지정			
									⑥ 계	증양	자체	
계												
경제수	소계											
바이오	소계											
특용수	소계											
유실수	소계											
사방수	소계											

(190mm×268mm)

[별지 제9호 서식]

산림용묘목검사통보서				
①수종별	②묘령	③수요처 (조림지)	④수량 본	⑤검사 예정일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 검사 예정일을 통보하오니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mm×268mm)

[별지 제10호 서식]

(1. 표 면)

산림용묘목검사야장					판정내용		
					합격 여부	최종합격묘 본 수	
① 모집단 번호		② 검사 일자		③ 합·불		천본	
④ 수종		⑤ 묘령		⑥ 수량		속 본	
⑦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⑧ 입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⑨ 검사자성명			소속	~			
검사 내역	포장 전 검사	⑩ 실제총속수					
		⑪ 시료기준(속) 본 수					
		⑫ 실제본수	본	⑬ 수량을	%		
		⑭ 실제본수중 합격본수		본	⑮ 품질을	%	
포장 검사	⑯ 실제총곤포수		곤포				
	⑰ 최종합격본수		본 (⑯×곤포당기준본수×⑬×⑮)				

(190mm×268mm)

[별지 제10호 서식]

(2. 이 면)

포 장 전 검 사								포장검사	해포검사			
속수검사		표 본 검 사						검사원입회 포장하였을 경우	검사원입회 무입회하였 포장하였을 경우			
⑱ 1속 열 당수	⑲ 열 수	수량검사		품 질 검 사					⑳ 입회 연월일	㉔ 입회 자 (검사 원)	㉕ 시료 (곤 포) 번호	㉖ 실제 분수
		㉚ 시료 (속) 번호	㉛ 실제 분수	㉜ 불합격요 인								
				번호	간장	근원경	근장	기타				
계												㉗ 속수비율 (실제곤포당 속수곤포당 기존속수)

[별지 제11호 서식]

산림용묘목재선별통지서			
생산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재 선 별 통 지	④ 모집단번호		⑤ 재검사 요청기한 20
	⑥ 수 종 및 묘 령		본
			본
		본	
	⑦ 수 량		
	⑧ 사 유		
<p>위와 같이 묘목 재선별 통보하오니 재선별 후 위 기한까지 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산림용 묘목검사원 소 속 : 직·성명 : (인)</p>			
<p>위 재검사 요청 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p>			

(190mm×268mm)